

A4-207

장애인 교육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993.7.29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전일빌딩 2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02) 521-5364 팩스·584-7701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권 자료		
분류	분기	자료번호
	A 4-1	209

장애인 교육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입시철만 되면 전국이 몸살을 앓는다. 아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1년 내내 교육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장애인교육은 일반 다른 교육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해 온 것이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법,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 큰 의미가 없는 법이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당사자를 '교육 받을 권리'에서조차 배제시켰던 실효성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전담부서 하나 없이 특수교육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만 상기하더라도 특수교육이 교육행정가의 관심밖으로 내몰렸는가를 알 수 있다.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지난 2년동안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던 교사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부모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또한 교육 받을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도 연구했다. 그 결과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도 벌였고 28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회의구조도 만들었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자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든 법안이 특수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법안을 만들고 다듬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많은 교사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자료집 외에도 장애인교육,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각종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1993. 7. 29

김성재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차 례

자료집을 내면서.....	2
√ 현행 특수교육의 문제와 법률개정방향.....	7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24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49
장애인교육 관련 법률안 비교.....	61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70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참고 : 이 자료는 지난해 4월 18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윤점룡(전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민주 교육 이념으로 강조된 이후로 특수교육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최근들어 특수교육은 한 나라 문명의 척도로서, 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나라는 발전된 교육 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00여년의 연륜을 쌓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인 이 법에 따라 1979년부터 특수교육진흥비가 교육예산에 책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특수교육 7개년 계획(1985-1991년)을 착수하여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추진은 출발 단계에 불과하며,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내실화는 물론, 전문 요원의 양성과 수급, 직업교육의 부실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은 국가의 절대적인 행정 지원과 막대한 경제지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수교육이 발전된 외국의 많은 나라를 보면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공법 94-142를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막강하고 새로운

법 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성안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온 데다 제정 당시와 지금은 사회·경제적·문화적 배경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현실에 적합한 법으로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한국특수교육협회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장애인교육법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나 제정은 몇사람 또는 몇몇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장애학생, 그 학생의 부모, 특수교육 교원, 장애학생의 교육기관,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사업가, 장애인 직업훈련원, 그리고 관련 종사자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공청회를 통해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알리는 출발의 시점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 자료에 의해 장애인교육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며 아울러 장애인교육법 제정과 관련되는 관계 법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총 16조로 구성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각 조항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조(목적)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편협한 발상에서 벗어나 헌법, 교육법의 목적과 동일하면서도 장애극복에 필요한 교육목적이 포함되도록 폭넓은 목적이 진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자 등 심신장애자'라는 용어의 사용도 문제가 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1항에서 '특수교육'을 '점자' 구화 및 보장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으나, 이는 분리교육에 치중한 협의의 정의로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최근의 특수교육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항의 '특수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원과 고등교육 과정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제시한 용어들(특수교육,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급)은 법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태여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하다면, 교육법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3조(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법 '제 9절 특수학교'에 있는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교육법 제 145조를 개정하여 포함시킨다.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바꾸면서 타법의 용어대로 '-인'으로 통일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각호에 나열된 시책이 너무 추상적이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2항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란 막연한 규정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 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 5조(무상교육)

의무교육을 규정하지 않은 채 무상교육만을 다루고 있으며, 무상교육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 6조(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제 4조 2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정책 의지가 의심스럽다.

제 7조(교육과정 및 교육용 도서)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교육법에 명기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 8조(장학금의 지급)

제 4조 2항이나 제 6조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제 9조(학비감면 등)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비 감면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는 그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통합교육에 필요한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제 10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 11조(건강 진단 등)

1항에서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어 버렸다. 2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제 12조(직업보도)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위의 제 11조와 비슷한 실정이다.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직업교육 전문 교사도 배정되지 않는 현 실정으로 볼 때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제 13조(특수교육 요원의 자격과 정원)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요원을 두되'라는 내용을 볼 때,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특수학교 교원과는 별도로 보조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치료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언어·물리·작업·청능훈련·심리 치료 교사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14조(특수교원 등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 교원들의 자질 향상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특수교육계로 끌어 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또한 특수교육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들에게 봉급의 일정비율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원'이라는 용어는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교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 15조(점자 도서관)

1991년 3월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장애인에게 학습, 교양 등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정의하고, 법인·단체·개인이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고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점자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의 특수 도서관에 해당된다. 점자 도서관의 시설·설비기준은 교육부령으로 특수 도서관은 문화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동일한 점자 도서관(특수 도서관)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법조문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 16조(시행령)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77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태어난 이 법은 부분적인 개정만으로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0년대 중반, 특수교육의 중흥을 위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애인교육법이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육과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들은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교육법에 명기하

기가 곤란한 항목들만 '장애인교육법'에 제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발표에서는 장애인교육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장애인교육법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아울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에 어떤 항목들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기본 방향

가. 모든 장애학생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9조에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취학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 아동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차가 큰 장애 학생들을 아무런 계획없이 일반학급에 방치해 버린다면 실질적 교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역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모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이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평등을 얻는데는 일반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가장 중

요한 요인이며 일반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 태도는 비교적 오래동안 지속된다. 이와같이 통합교육은 장애인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켜주며 일반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준다. 그러므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 장애유아의 잔존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 촉진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능력은 제각기 발달의 적기를 갖고 있는데 적기를 놓치면 학습효과가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이 더욱 중요하며 예방교육의 차원에서도 조기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을 마친후의 성인기는 학령기에 비하여 2,3배로 길다. 성인기나 노년기를 얼마만큼 건전하고 보람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학령기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자아실현 및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므로 직업교육 및 생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장애가 가벼울 수록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며 장애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부분통합을 하여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일반사회내의 오락을 즐기고 소비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 자녀의 판별이나 특수교육 정책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부모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다. 자녀가 판별이나 배치에서 부당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일반아동에 비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 나름대로 권익옹호를 위한 압력 단체로서 정책결정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개별화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별화 지도에 사용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현재 교육능력과 상태, 장. 단기 교수목표와 프로그램 시작시기와 지속시간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객관적 척도와 평가 절차 및 일정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 * 장애 학생은 유치원,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의무교육)
- * 모든 장애학생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받는다.
- * 장애학생의 취학 기회를 늘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늘인다.
· 교육대학의 부속 국민학교와 사범대학의 부속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부속 특수학교를 개설한다.
- * 교육기관에 취학이 곤란한 중증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교과지도, 훈련, 요육활동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 * 학령장애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통학비,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용품 구입비 등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통합교육

-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특수교육 전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 *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에 '특수교육 개론' 강화를 필수로 하고 현직 교사연수 및 자격 강습시에도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을 이수토록 한다.

다. 조기교육

- * 장애유아들은 시.군 교육(구)청 특수교육과에 등록하여 판별 및 특수교육기관의 배정을 받도록 한다.
- * 특수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치부를 설립해야 한다.
- * 일반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 * 취학전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센터를 인가제로 전환하되 교사들

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한다.

라. 직업교육

-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 학생들이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개설한다.
-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실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업체와 유대관계를 맺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한다.
- * 고등부를 마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국립특수학교내에 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 *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실기교사를 대학에서 양성하여 배출한다.

마. 부모참여

- * 부당한 판별에 대해 학생의 부모와 후견인은 거부권을 지닌다.
- * 각급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에는 반드시 학부모 대표를 참석시킨다.

바. 개별화 지도

- * 장애학생의 교육은 개별화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 *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탄력성 있는 교육과정을 작

성한다.

- * 개별화 학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 개별화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장애 영역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교육법 시행령 176조에는 학급당 15명 이하로 되어 있음)
- * 특수학교의 운영은 무학년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행정 지원 체제

- * 취학전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은 시, 군교육(구)청 특수교육과에서 관내 모든 장애아동들의 등록에서부터 판별, 배재 추수지도까지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시, 군교육(구)청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은 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 * 교육부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여 법 시행과 특수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을 계획, 관리, 시행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특수교육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
-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직업보도비, 기숙사 운영비, 통학버스 운영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제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 * 특수교육진흥비를 전체 교육비의 1.5%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현재는 0.44%)
- * 특수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의무주체는 당연히 국가이어야 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 특수교육 교원

- * 특수교육기관에는 요욕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봉급의 일정비율을 특수교육 수당으로 가산하여 매월 지급해야 한다.

5.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관계법 규의 개정

교육법에서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특수학교 교사를 '특수교육 정교사(1급, 2급)와 특수교육 준교사'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사유: 특수교육 교사의 상위직 취득으로 위한 재교육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별표 1의 교사자격 기준에서도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학교 내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 자격 기준도 세분화 해야 한다.

별표 2에서 특수학교 교장, 교감은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장(교감) 자격증을 가진자로 되어 있다.

이 항목을 교장은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교감은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

제 126조 실습학교 부설에 있어서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부설하도록 한다.

교육법 시행령에서

제53조의 2. (시설, 설비) 학교를 설치할 때 ()학급이상의 학교에서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71조의 4(학력고사)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력검사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체력검사로 개정한다.

제102조(취학의무의 유예 등)삭제되어야 한다.

제176조(특수학교의 학급)학생수는 학급당 15인 이하로 한다를 학생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장애영역별 정도별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개정한다.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에서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 과목) 맹, 농, 정신박약 및 지체부자유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로 개정한다.

6. 맺는 말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연례행사인 '장애인의 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요즈음 국내가 장애인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일거리로 시끌벅적하다. 정부와 각종 복지단체에서 배풀어주는 잔치와 푸짐한 선물까지 주니 장애인들은 더 없이 좋은 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적 삶이나 인권상황과는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장애인의 날을 보면 웬지 서글퍼진다. 주인공들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객들이 설치기 때문일까?

장애인의 재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부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수학교의 고등부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어느 정도 케도에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도 무상교육 나름이지 교통비, 학습준비물비, 과외치료비 등 매달 장애 학생 밑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무슨 무상교육인가? 10년이상 건의를 해온 특수교육의 숙원사업이 몇가지 있는데 그 첫번째가 교육부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다. 100만에 가까운 장애학생의 교육을 교육부내의 연구사 1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알까봐 두렵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단체에서 집요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제정하는 장애인교육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한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

은 어제 오늘만의 일만은 아닌데 이들이 특수학교에 적을 두지 못하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가능하면 장애가 가벼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학교도 나무랄 수는 없다. 학급당 인원수를 10여명으로 채워서 가르치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집 옆에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일반학교에서도 심한 장애학생이 얼마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 이름이 붙은 통학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 다니는 게 꿈이라는 어느 학부모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법을 다듬어 보자. 장애아동을 낳아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매달 몇 십만원 들여 조기 교육 클리닉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고 학교 졸업후에 직장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을 시키는 장애인교육법을 만들어 보자.

오늘 이 발표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조그마한 자료로서 출발신호에 불과하다. 한번 제정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하여 우리 장애인복지와 권익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장애인교육법이 되게 하자.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고 : 이 법안은 공대위의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교사, 학생, 장애아동의 부모, 교수, 법률가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각종 공청회와 심포지움, 워크숍을 개최하여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서늘한 봄, 가을바람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그리고 눈보라치는 겨울날에도 특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끈임없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련된 소중한 우리의 결실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안 명칭도 동일하게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민주당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안 이유]

1. 시대적으로 변화된 인식의 수용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장애인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질적인 이해가 증대되면서 통합교육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기회의 완전한 확보, 발달단계에 따른 조기교육의 중요성, 개인간(interindividual)·개인내(intraindividual)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의 필요성,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부모교육의 필요성 등 수많은 이념과 요구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선진 특수교육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

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제안 목적은 크게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권의 완전한 확보, 그리고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현, 기타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을 실현하는 데 있다.

2.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사람들은 흔히 통합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접근해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통합교육 차원에서의 특수교육은 단순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물리적인 통합은 국가 사회적으로 전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진정한 통합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에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며, 통합교육은 그러한 태도와 경험을 토대로 장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한편,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장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시급히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기회는 법률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 더욱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작 학교가 없어 그 뜻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더라도 입학에서의 불이익,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수많은 차별교육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낙도에 사는 몇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는 분교까지 설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도 장애인의 교육권이 이처럼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편견과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수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학교는 그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영역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직업교육 외에도 조기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그 방면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기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당면한 요구의 수용

이상에서 밝힌 통합교육의 이념실현과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확보,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는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수용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로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제안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수교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당면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이다.

주요 골자

1. 통합교육의 이념

- 1)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명시한다.
- 2) 특수학급의 목적, 설치, 종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 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불이익 처분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5) 조기교육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 1) 조기교육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 3)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4)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으로 한다.
- 5)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6)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 연령을 0세부터로 한다.
- 7)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한다.

3.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 1)진로교육을 실시한다.
- 2)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3)부모교육을 실시한다.

4. 기타

- 1)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다.
- 2)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3)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3)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을 규정한다.
- 4)국립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한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특수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 등의 교육을 말한다.
- 2. "조기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조기교육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2.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통합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조기 발견
5.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취학 및 졸업 후의 지도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 4조(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①'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특수교육 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 19조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별한 사람을 말한다.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자폐, 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심신장애인

②'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 연령은 0세부터로 한다.

제 5조(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①'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시, 도 교육감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시 모든 교원들이 특수교육의 소양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에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 6조(권리교육) ①'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 7조(무상교육) 이 법 제 6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법 제 143조의 2에 의한 전공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 8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의 거부,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지원을 할 경우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의 구술, 대필 등 입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각급 학교의 장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 등 모든 수업과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9조(순회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사람에게는 인접지역의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이나 병원,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순회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치료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은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치료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③특수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3조(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수교육 판별위원회

제 14조(목적)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하고 판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각급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이하 "판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 15조(구성) ①교육부에 "중앙 판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각 도 및 직할시에 "시·도 판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를 둔다.

② "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전문가, 사회사업가, 의사, 법률가, 심리치료사 기타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되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임무) ①"중앙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
3. "시·군(구) 판별위원회"와 "시·도 판별위원회"의 지휘 감독

② "시·도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
2.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의 적절성 심의

③"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견,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각급 학교, 또는 특수교육 기관에의 배치
3. 부모상담

제 17조(진단·배치청구) ①"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 부모, 보호자, 또는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진단·배치에 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 1항의 진단·배치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8조(교육기관에의 배치 및 지정) ①"판별위원회"는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배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판별위원회"로부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 19조(판별기준 및 방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 판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조(이의신청)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급 판별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급 판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21조(부모 등의 참여) ① 판별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장 특수교육기관

제 1절 조기교육원

제 22조(목적) 조기교육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심신 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무한한 잠재

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3조(설립, 경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경영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 24조(설립허가 등) ① 조기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폐쇄 명령)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 3장 1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 26조(지휘 감독) 조기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27조(장학지도) 각 시·도 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28조(취원 대상의 연령) ①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교육원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취원 시킬 수 있다.

제 29조(조기교육원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조기교육원에는 원장 및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원장은 조기교육원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원감은 조기특수교육 정교사(1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 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조기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 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교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30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을 감독하며 당해 조기교육원을 대표한다.

②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원아를 교육 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및 원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 31조(교직원의 임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조기 교육원의교직원은 교육감이, 법 제 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기 교육원의 교직원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복무) 조기교육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과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절 특수학교

제 33조(목적) 교육법 제 143조에 의한다.

제 34조(특수학교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 학교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분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5조(통학편의) ①특수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기숙사나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절 특수학급

제 36조(목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통합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7조(특수학급의 설치) ①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 145조에 의한다.

②전항에 의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 38조(특수학급의 종류) ①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하되 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자폐, 정서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전일제 특수학급
2. 시간제 특수학급
3. 특별지도실

제 4 장 개별화교육

제 39조(목적)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 개인의 정서, 생활유형, 학습능력, 학습습관, 지능 등에 따라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0조(개별화교육 계획) ①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별화교육 계획은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개별화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 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1조(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 ①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2조(개별화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개별화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하로 하되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수를 현실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제 5 장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 43조(진로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로교육의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4조(직업교육) ①고등학교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은 전문 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를 두

어야 한다.

③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 및 실기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6 장 장학금과 학비 감면 등

제 45조(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6조(학비 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 47조(부모교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8조(특수교육 연구원) 국가는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및 특수학급, 조기교육원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계획의 연

구개발, 각종 교재, 교구 및 진단, 판별도구의 개발, 특수교육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립한다.

제 7 장 별 칙

제 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조 제 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교육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조기교육원을 설립한 자
3. 제 25조에 의한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 26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5. 제 2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자
6. 제 31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임면보고를 아니한 자

제 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1. 제 8조를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자
2. 제 18조 제 3항을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한 지정을 거절한 자

제 5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25조에 의한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 26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3. 제 27조에 의한 장학지도를 받지 않은 자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 교육감이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자

제 2 조 : 용어의 변경(특수교육권)

제 3 조 : 시설의 경과조치

제 4 조 :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 조기교육교사 자격기준

자 격	기 준
정 교 사 (1 급)	1. 조기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조기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정 교 사 (2 급)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조기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자
준 교 사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교 육 부

참고 : 교육부는 지난 7월 2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하기 직전에 마련한 법안을 실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입법예고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난 8월 초순경에야 확정된 안으로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이 안중에서 제 25조(국립특수교육연구원) 부분도 내무부의 반대로 7월 26일 현재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배양토록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제 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그들의 요구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요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과정을 교육하는 특수유치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라 함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병설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4. "전공과"라 함은 고등학교 과정 졸업 후 직업전문기술의 심화를

위한 1년 이상의 직업전문심화과정을 말한다.

5.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반교사로서의 자질과 특수교육 소양을 갖춘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이용능력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수반하고 있거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원이 병원, 학교, 가정, 및 기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요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기능을 촉진시켜 주기 위한 치료교육활동으로서 보행훈련, 심리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생활적응훈련 등을 포함한다.
9. "특수출판소"라 함은 장애인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을 출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조(특수교육대상자)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 자폐증

- 6. 언어장애
- 7. 학습장애
- 8. 기타의 장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의 기준과 절차 및 이를 위한 특수교육 진단,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2. 생활기능회복을 위한 요육대책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4.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 개선
- 5. 특수교원의 양성, 현직연수 및 우대책
-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및 시설, 설비(요육시설, 직업교육시설, 기숙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정비
- 7. 특수교육 교재,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보장구 포함)의 연구, 개발, 보급
- 8. 직업교육 대책
- 9.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 10.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 11. 기타 특수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5조(의무교육) ①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령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무상교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용 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 7조(순회교육) ① 시·도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학령기를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수용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병원 혹은 가정 등에 특수교원을 파견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8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때나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특수교육 기자재를 확보하고 손잡이, 경사로, 화장실, 책상,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시 모든 교원들이 특수교육 소양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에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9조(특수유치원) ①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유치원 과정의 학령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유치원은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에 병설할 수 있으며, 그 설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차별의 금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모

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장 교육과정

제 11조(교육과정)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라 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2조(교과용 도서)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관계연구기관, 특수출판소 등을 지정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으며 편찬·검정·인정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조(개별화 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는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주어진 정원 범위내에서 교사의 배치를 조정·활용할 수 있으며, 초등부이하 과정에는 교사를 증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 2항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3장 요육

제 14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요육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5조(요육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둔다.

②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장 직업교육

제 16조(직업교육 여건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자는 당해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상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학부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학교에는 직업교육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직업재활 전문가 자격을 갖춘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17조(전공과 운영) 고등부 설치교는 고등부 졸업자의 직업전문기술의 심화를 위하여 수학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그 설치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장 장학금

제 18조(학비감면 등) 특수교육기관 이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조(장학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특수교육교원

제 20조(특수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들

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원의 직전교육과 현직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원이 갖추어야 할 수행능력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제 21조(특수교원의 우대 등) ① 특수교원은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되어야 한다.

② 특수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자와 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지원체제

제 22조(특수교육자문위원회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특수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수교육자문 대상자 진단·평가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23조(취학편의시설) ① 특수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사나 통학버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하고,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당해 학생의 주민등록지를 옮겨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당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4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조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25조(국립특수교육연구원) 국가는 특수교육발전을 위하여 장애별 전문연구, 교육과정과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특수교원의 연수를 담당하는 국립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운영한다.

제 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법 제98조중 “불구, 폐질, 병약, 발육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

불완전 또는"을 "보호수용급의 중도장애, 질병 또는"으로 한다.

제 3조(특수교육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요원 및 요육실지교사는 이 법 제15조에 의한 요육교사의 정원내에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격취득에 관하나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다.

장애인교육 관련 법률안 비교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고 :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애인교육 관련 법률안 비교

- 교육부와 공대위 법률안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1. 머리말

지난 7월2일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는 달리, 그동안 한 차례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안 작업진행과정을 외부에 거의 알려 오지 않았던 터이라, 이번에 입법예고한 교육부안은 공대위안과 더불어 장애인계는 물론 모든 특수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부안을 최종안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 내용이나 시기로 미루어 더이상의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이 법안을 교육부의 기본 입장으로 받아 들이는 데는 그다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월 8일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임시 국회에서 입법을 청원하기 위한 작업과 법안 설명회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여기서는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낸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과 공대위가 2년여에 걸쳐 마련하고 추진해 온 '장애인교육에 관

한 기본법안'을 함께 소개하여 비교하고, 두 법안 사이의 몇가지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교육부와 공대위의 법률안 비교

우선,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과 공대위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앞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두 법안을 잘 살펴보면 교육부와 공대위 사이에 '통합교육'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하나의 구체적인 제도로 규정(제2조 용어의 정의 6)하고 있으나, 공대위는 통합교육을 법안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이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공대위 사이에는 장애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의무교육과 실제적인 판별위원회의 설치, 조기교육원 과정의 법률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 개혁에 있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장을 바꾸어 보다 자세히 살펴 보아야겠다.

3. 교육부와 공대위의 쟁점 사항

가. 조기의무교육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만 규정해 놓고 있다(제6조). 이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장애인과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을 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 오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를 입지 않은 국민에게는 국민학교부터 지역적으로는 중학교까지 교육법에 의무교육(제8조)의 기회를 두어 학령기가 되면 전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규정(제98조)을 두어 장애를 입은 일부 국민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에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부 장애를 입은 국민에 대해 그동안 국가가 취해 왔던 무책임한 인상은 어느정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여전히 인간의 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평등한 시민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장애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무교육 연한은 장애를 입지 않은 국민과의 현실적인 형평성에 더욱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은 국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것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과 한 다리밖에 없는 사람이 같은 시간 내에 일정한 지점까지 도착하게 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서는 안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장애를 입은 국민이 장차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입지 않은 국민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대위는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학교 취학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무교육 연한으로 설정한 것은 장애를 입은 아동에게 있어 이 기간의 교육이 다른 어떤 시기의 교육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합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기교육의 의무화는 장애아동이 장차 학령기에 접어들어 계속 특수학교와 같은 분리된 교육기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통합교육의 조기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장애인의 의무교육 연한을 장애를 입지 않은 국민과 똑같이 규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과 경제적인 측면만을 내세워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또하나의 차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조기교육기관

최근 몇년 사이 장애인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의 조사(1993)에 의하면,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220여개로, 이 가운데 특수학교 유치부가 34개, 복지관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조기교육실이 27개, 종교단체 및 종합병원, 대학 부설 교육기관이 32개, 기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기교육기관이 127개에 총 5천여명의 아동이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조기교육을 꼭 받아야 할 전체 장애아동의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특수학교나 복지관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조기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육기관의 운영이 전액 부모들의 교육비에 의존하

고 있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기교육은 일관된 교육과정은 물론 교수방법 등이 정립되거나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이렇다 할 자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력과 처우에 관한 아무런 제도도 없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우가 낮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이직률이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이나 일관성있는 교육을 받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조기교육의 열악성은, 굳이 '발달이론'이나 '결정적 시기론'과 같은 학문적 근거를 내세워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 및 사회 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한편, 조기교육기관의 설치와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유치원을 조기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교육 연한이 짧아(유치원 과정에 준함) 조기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힘들며,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나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취학에 따른 어려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공대위안은 조기교육에 대한 3세부터의 의무교육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기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대상, 설립, 감독 및 폐쇄, 교직원의 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장애인의 조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안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다. 판별위원회

교육부안은 현행법에서 무상교육으로만 규정한 특수교육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바꾸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 대상을 찾아내어 정확히 진단하고 판별하여 그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안은 정작 그 대상의 판별과 배치에 따른 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 현행법에서는 시행규칙상에 판별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여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별위원회에서 진단과 판별만을 할 뿐,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 업무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마저도 각급 특수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진단, 판별, 배치 등을 현장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임의대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이나 정규학교에 통합되어도 충분한 학생이 특수학교에 취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며, 특수학교에 따라서는 장애의 영역이 다른 학생을 취학시키고 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또, 일부 특수학교들은 시설 수준이나 수업상의 어려움을 구실삼아, 보다 경중의 학생들을 우선 뽑기도 하고, 선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잡음을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조기 진단과 정확한 판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로서의 판별위원회가 법률 수준에서 반드시 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대위는 판별위원회의 기구를 3단계로 확대하고 그 임무와 권한을 법률적으로 강력히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기관의 학생선발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막고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였다. 반면에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교육부와 공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 보았다. 교육부와 공대위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나타난 일치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기의무교육과 조기교육기관, 판별위원회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와 공대위 간의 커다란 시각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공대위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체적인 시각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을 기초하는 이념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현실적인 형평성을 더 중시한 인상이 짙은 반면, 공대위는 그동안 법률의 이념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통합교육을 실천 이념으로 못박고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을 통해서만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장애인 복지를 위한 10년

선언'을 통해 3세부터의 장애아동 조기교육권 보장과 장애인에 대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실천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것은 곧, 장애인의 교육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공대위의 기본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공개한 이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새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구태의연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태도는 4백만 장애인의 기대와 특수교육계 전반의 기대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의 커다란 분기가 될 이번 법률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는 과거와 같이 비공개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를 버리고, 장애인 교육의 관련 대상이며 주체인 공대위의 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토론하여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 교육 제도를 완성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위원장:김성제. 한신대교수, 한국장애인총연맹공동대표
 부위원장:심동섭. 한국농아복지회 상임이사
 대변인:이성재.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상임운영위원회>

고통장애인협회, 부름의전화, 삼육재활원, 수화동아리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재활재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정신박약자복지관, 한국장애인자부모회

<참가단체>

가톨릭의대키비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대 손말사랑회, 교통장애인협회, 남북한장애인건기운동본부, 단대 키비탄, 대한정신박약자보호협회, DPI 한국, 베데스다선교회,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연합수송봉사단, 부산장애인연합회,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부산한국장애인고용복지협회, 불교사회복지회, 사랑의친구우리, 사회복지축진협의회, 삼마회, 서강대손짓사랑회, 서울대손말사랑회,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시설문제연구회, 외대손말사랑회, 원심회, 이대 손지, 이대 키비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동문회, 전국자원봉사활동협의회,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참우리, 충남장애인자부모회, 청음회관,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약시재활협회, 한국장애인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점자도서관, 한신대재활학과학생회, 한양대손말사랑회, 한양대키비탄, 한국장애인자부모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정신박약자복지관, 한국맹인이료연구회, 경남지체장애인협의회(가나다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고문>

김관석목사(새누리신문사장), 김기창(한국농아복지회회장), 김석원(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회장), 김성수주교(대한성공회, 한국장애인총연맹), 김학목회장(한국뇌성마비복지회), 문병기이사장(한국재활재단), 조일목(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송건호(한겨레신문회장), 송영욱변호사(DPI한국회장), 송월주스님(경실련공동대표), 이우정의원(민주당, 한국장애인총연맹), 이원순(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회장), 이정일(전남일보사사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이태영(대구대총장), 지학순주교(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홍창의교수(인도주요실천의사협의회 고문)

<자문>

관도용(한신대교수), 김완(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회장), 김호준(부산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활용(이수교회목사), 민군식(삼육재활원원장), 박성구신부(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지영관(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박용수(한글문화연구회이사장),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 손봉호(서울대교수), 신정식(녹십자병원원장), 양금순(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유경운(여수이향재활병원원장), 윤석용원장(장청고문), 옥병일(한국점자도서관관장), 이철웅전의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전익준(서울정박자복지관관장), 정화원(부산장애인연합회회장), 배연창(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전봉운사무국장(삼육재활원원장), 채규철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 한승헌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황원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정권(대한정신박약자보호협회회장), 윤중구(서울대병원소아과교수), 정형석(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회장)